

## 【 5 】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9. 3.  
발 의 자 : 홍범표 의원  
외 6인

### □ 개정이유

지난 해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  
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정  
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
되어 지원대상에 이를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조례 제2조 제2호의 지원대상 제외사항을 삭제하여  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 
지원제외대상에서 지원대상에 포함

나. 조례 제3조 제1호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차등화하여  
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·  
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 
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 
지급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1

□ 관련법령 발췌: 별첨2

○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예산수반사항 : 116,640,000원

○ 참전명예수당 20,000원×486명×12월=116,640,000원  
(2009년은 9개월 87,480,000원)

□ 사전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양주시조례 제 호

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 2만원 지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
제 2 조 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(이하 "유공자"라 한다)로서 지급일 기준 현재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	제2조(지원대상)-----
1. 생략	1. 현행과 같음
2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· 제6호 · 제7호 ·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	2. <삭제>
제3조(지원사업) 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3조(지원사업)-----
1.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지급 (후단 단설 신설)	1.----- (다만,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 2만원 지급
2 ~ 5.(생략)	2 ~ 5.현행과 같음